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

의 안 번 호	2889

제안연월일 : 2026. 10. 8.
제 안 자 : 의장 곽 동 환

1. 주문

가. 2026년도 달성군 행정사무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위해 달성군의회는 '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'를 구성한다.

나. 활동기간 : 2026. 10. 8. ~ 2026. 12. 18. (72일간)

다. 위원수 : 의장을 제외한 11명으로 한다.

라. 본 특별위원회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제안이유

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,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.

3. 관련 규정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

나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

다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14조

참고 **상위 및 관계 법령(발췌)**

□ 지방자치법 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
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(행정사무감사)

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를 행한다. (개정 2015.4.30)

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,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 (개정 2002. 3. 22, 개정 2011.9.23)

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, 감사위원회의 편성, 감사요령,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.

⑤ 의회의장(이하 ‘의장’ 이라 한다)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(위원)

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